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-9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7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·운영하여,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규정 개정(안 제1조)

- 조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제9항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개정

나. 구성 규정 개정(안 제3조)

- 민간투자사업심의 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 근거 마련

다.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~ 간사(안 제4조~제8조) 및 수당 등(안 제11조) 삭제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6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9. 6. 7. ~ 6. 2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7. 9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제9항에 따라”를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운영)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.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안전행정국장, 복지교육국장, 도시환경국장,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운영)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.</p>
<p>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제5조(임기) ① 공무원인 위원의</p>	<p>&lt;삭 제&gt;</p>

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<삭 제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.

<삭 제>

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 개요,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

<p>다.</p> <p><u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</u> <u>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</u> <u>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</u> <u>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 
총3억원 미만인 경우)

**3. 미첨부 사유**

가.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 :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안명희 (☎ 3153-8512 )**